

「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정지원 의원 외 12명

2. 제안이유

-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 사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
-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(안 제3조제2항)
- 「구미시 청소년 육성조례」 폐지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위원회 변경(안 제5조)
 - 당초: 「구미시 청소년 육성조례」 “청소년육성위원회”
 - 개정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 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”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조항 신설(안 제6조의2)
- 학교 밖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·점검 등 조항 신설(안 제7조의2)
- 제8조(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) 조항 삭제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10조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부서검토: 교육청소년과 의견제출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관련법규 폐지에 따라 인용 법령 변경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구미시 청소년 육성조례」의 폐지에 따라 위원회를 ‘청소년 육성 위원회’에서 ‘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’로 변경하는 등 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여 조문을 재정비하였음.
- 또한, 시장의 책무 조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시(市)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한 것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삭제된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추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.